

■ 최신 판례 ■

[조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유용이 가능한가

박용대 변호사 | 김희석 변호사

1. 판결의 취지

-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 (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관계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하 '1차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8일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2004년 10월 7일 공매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04년 10월 5일 1차 국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 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장은 2004년 11월 20일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이하 '2차 국세')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공매통지 없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등), 이는 특정한 피보전권리를 요구하는 보전처분의 목적상 타당한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체납국세)의 유용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압류의 목적이 된 체납국세(1차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이후 다시 체납세액(2차 국세)이 발생하면 최초 압류는 다시 그 체납세액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는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도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공매통지가 공매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 판결은 오해하기 쉬운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